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2.

발 의 자 : 조정훈 · 서천호 · 조지연
최수진 · 김용태 · 박수영
이주영 · 김대식 · 박형수
김장겸 · 정성국 · 김미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음.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,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,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.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,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「지방공기업법」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

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13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81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
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“지방직영기업”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	제2조(적용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3. 「 <u>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<u>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</u>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